

교역자은금기여금 안내

- ☑ **1958년 7월 이후 출생 교역자만** 해당하는 사항입니다.
- ☑ **교역자은금기여금 중 2007년, 2010년, 2013년분에** 해당하는 사항입니다. ※ 1차년도(2007년), 2차년도(2010년), 3차년도(2013년)
- ☑ **2024.12.31.까지 1회분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.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미납 1회마다 10% 차감이 결정됩니다.**

교리와 장정(2023년)

【1225】 제25조(신은금법과의 관계) 신은금에 가입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신은금(연금형)과 환원은금(현행감리교회 은금) 두 가지를 유지할 수 있고 택일할 수도 있다. 다만, 신은금(연금형)을 선택하면 교역자 기여금의 납부의무는 면제되나 감리교회의 은금혜택은 그 기간동안 차감한다. 감리교회의 은금혜택을 받으려면 신은금의 시기에 납입하지 못했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.

① 교역자기여금은 당해연도의 은금재단이사회가 정한 최저액(1차년도 60만원, 2차년도 60만원, 3차년도 80만원)을 납부한다.

② 미납된 기여금을 3년 이내에 1회라도 납부하면 환원은금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하고 3년 이내에 1회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은금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③ 미납된 기여금은 5년(2026년까지)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5년 이후에는 연체된 기간만큼 법정 최고이율의 가산금과 함께 납부해야 한다.

【1220】 제20조(납입방법) 제5조(기금의 조성의무)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‘허입은금기여금’, ‘교역자은금기여금’ 및 ‘교회은금부담금’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교역자은금기여금

3. 교역자가 **교역자은금기여금을 미납하면 미납 1회마다 은금금 지급 시 10%의 감소 처분을 받게 된다.**



1958년 7월 이후 출생 교역자 중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해지하신 경우, 2007년, 2010년, 2013년 3회분 중 1회분이라도 2024.12.31.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 (남은 2회분의 납부기한은 2026.12.31.까지입니다.)

준회원 허입연도에 따라 2010년, 2013년 혹은 2013년만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2010년분 혹은 2013년분을 2024.12.31.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
※ 2024.12.31.까지 1회분이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은금(연금형)을 선택한 것으로 되어, 은금금 지급 시 최대 30% 차감이 결정됩니다.

